

본 자료는 2004.5.21(금) 경제장관간담회 직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	보도자료 산업자원부 공보관실	작성과	지역투자입지과
		담당자	이병철 과장 이한철 사무관
		전화	2110-5304

수도권기업 지방이전時 재정 지원

- 산업자원부는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한 총고용규모 100인 이상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, 용지매입과 고용 및 교육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음

- 용지매입 지원 : 분양가 또는 토지매입비 등의 최대 50%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50%를 지원
- 고용 지원 : 지역민을 20인 이상 고용하고 초과인원 1인당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50% 지원
- 교육훈련 지원 : 지역민을 20인 이상 고용하고 교육훈련을 시키는 초과인원 1인당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50% 지원
- * 기업이 낙후지역으로 이전시는 지자체 지원금액의 80%를 국가가 지원

- 이는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고 제조업의 해외이전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

- 수도권소재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가급적 지방이전으로 유도하고 수도권지역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으로의 구조고도화를 기하도록 함으로써,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

□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소재지역(被이전 대상지역)은 다음과 같음

-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시·군·구
- 성장관리·자연보전권역 중 인구와 산업의 집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시·군·구(화성시, 양주시, 김포시, 포천시, 안산시)
- *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에서 정한 인구밀도, 광업·제조업사업체수, 광업·제조업출하액을 종합평가하여 전국 232개 기초지자체 중 상위 20%에 해당하는 지자체를 선정
-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낙후지역과 행정구역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인 기초지자체는 제외
 - 낙후지역 제외 원칙에 따라 읍·면·동 기준으로 김포·포천의 50%, 양주의 45% 지역이 제외됨
 - 김포 10개 읍·면·동 중 5개 읍·면·동 제외(월곶면, 통진읍, 하성면, 대곶면, 양촌면)
 - 포천 14개 읍·면·동 중 7개 읍·면·동 제외(관안면, 창수면, 영북면, 영중면, 신북면, 이동면, 화천면)
 - 양주 11개 읍·면·동 중 5개 읍·면·동 제외(남면, 은현면, 광적면, 백석읍, 장흥면)

□ 공장이전 뿐만 아니라 본사 또는 연구소가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며, 대기업 이전에 따른 소규모 협력업체가 집단이전하는 경우에도 재정지원이 실시됨

- 공장의 경우 이전 후 2년 이내에 고용규모 100인 이상되어야 지원
- 본사의 경우는 50인, 연구소의 경우는 30인

- 지방이전기업은 이전해 가는 지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되, 입지보조금은 분양·매입계약서,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를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계약체결시점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초기이전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음

□ 이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이전비용이 경감되고 또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줄어들어, 해외로 이전할 계획을 가진 기업들의 지방이전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됨

□ 앞으로 산업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역별 공장설립센터와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이전기업의 애로가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